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남범우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11월 23일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3.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 분장사무 신설
  - 기획관리실 :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신성장산업국 :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사항
  - 환경산림국 : 기후대기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 병해충대응에 관한 사항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바이오센터에 관한 사항

## <자율신설기구 기간연장>

○ 신성장산업국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부서의 팀 신설·변경(이차전지산업팀, 산림바이오센터, 탄소중립팀) 및 자율신설기구 기간연장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고,

둘째,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성장산업국에 신설하고,

셋째,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환경산림국에 신설하고,

넷째,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설하고,

다섯째, 신성장산업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는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위하여 현안업무 위주로 과 증설 없는 부서기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